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	제2975호

제출년월일 2022. 03. .
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❍ 본 안건은 2022년 3월 0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‘22.1.27.)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역할과 의무가 강화되었으나, 현 조례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고 이사장이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

❍ 조례개정을 통해 대표이사 직무를 명확히 적시하여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의무 확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 (안 제8조제1항)

1) 대표이사는 재단을 재단의 업무를 총괄

2) 재단을 대표하는 자 : 당초)이사장 변경)대표이사

나. 대표이사 부재시 직무대행 지정 (안 제8조제1항)

- 직무대행의 순서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함

다. 재단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 변경 (안 제10조)

-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하는 것으로 변경 (당초 : 이사장)

4. 검토의견

❍ 본 안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안전한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